

## ❖ 사회보험제도와 고용보험 개요

### 1. 사회보험의 종류와 특징

#### (1) 사회보장 제도

##### 1) 의미

-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으로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

##### 2) 정의

- 사회보장: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체하는 국민의 소득과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이 있음
- 공공부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지원 등이 있음
- 사회서비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자활, 돌봄, 정보의 제공, 역량 개발,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가 있음

##### 3) 사회보험의 종류와 특징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향상, 재취업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근로자 보상, 무과실 책임주의, 보험료 사업주 전액 부담, 정률보장 방식
국민연금	가입 강제성, 소득재분배,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등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강제적용,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보험급여의 균등한 보장,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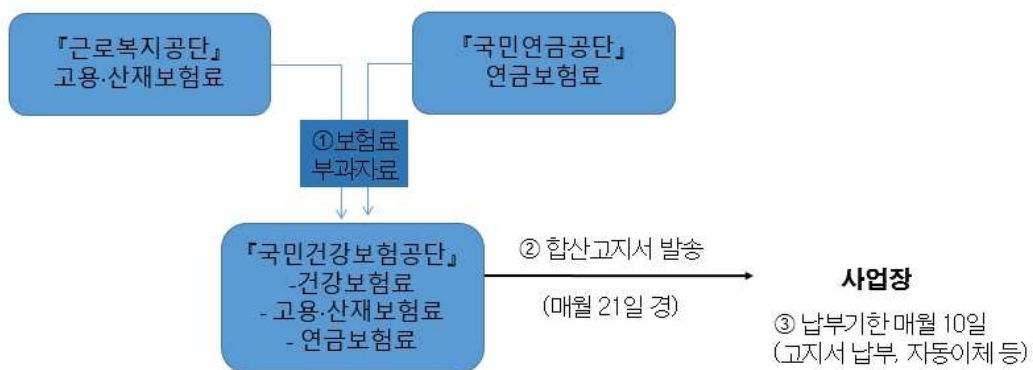
##### 4) 사회보험기관 주요 업무보험의 종류와 특징

- 근로복지공단
  - 피보험자 관리: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등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적용 및 보험료 징수: 가입 및 변경, 소멸
  - 산업재해보상: 요양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 지급
  - 근로자 지원: 근로자 생활자금 대부사업, 임금채권 보장 등
  - 산재 의료: 근로복지공단 의료기관 운영, 산재환자 치료 등
  - 재활지원: 재활상담, 후유증상 관리 등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실업급여 사업: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등 지원
  - 취업지원: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
  - 고용안정사업: 고용창출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 외국인 채용지원: 외국인 고용허가제
- 집단직업 상담: 직업 탐색 및 취업기술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직업능력개발: 근로자, 실업자, 자영업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
- 국민연금공단
  - 자격관리: 국민연금 사업장·사업장 가입자·지역 가입자·임의가입자 등 관리
  - 징수관리: 연금보험료 부과·정산 관리,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징수·정산 관리
  - 급여관리: 연금급여의 청구, 수급권 확인 및 지급, 연금급여 지급정지 및 제한 등
  - 사회보장협정 관리: 외국인 국민연금적용 배제업무, 급여청구 업무
  - 대부사업: 노후긴급자금 대부
  - 기금운용: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격관리: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탈퇴, 가입자 자격취득·상실 등
  - 부과관리: 직장 및 지역보험료 정산 및 보수월액 변경
  - 보험급여 관리: 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 및 상한액 초과금 지급업무 등
  - 건강관리: 건강검진, 의료이용 지원 사업
  - 노인장기요양: 요양급여 비용 심사·지급 업무, 급여사후 관리
  - 사회보험료 징수: 사회보험료 통합 고지·수납·체납 업무

5) 사회보험 통합징수

- 목적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사회보험 업무 중 유사·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
- 사회보험료 고지·납부



※ 건설업·별목업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고지·납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체납한 고용·산재보험료의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함

2.고용보험의 개요

(1) 고용보험의 개요

1) 목적

-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해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용어의 정의

- 피보험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와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 이직: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
-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3) 고용보험 적용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4)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

- 직업 종류 불문,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제공, 보수는 근로의 대가성
- 근로자성 판단요소
  - 지휘명령의 존재여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지고 이에 구속 받는지 여부
- 임금성 요소: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5)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 실업급여 적용제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 )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한해 가입 가능
-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가능)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2) 고용보험 사업

1) 종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과 실업급여 사업으로 구분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 대상: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 목적: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 지원

- 종류
  - 고용안정: 고용창출의 지원, 고용조정 지원, 지역 고용의 촉진,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지원,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 직업능력개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3) 모성보호

- 근로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등 부여, 대체인력지원)

4) 실업급여

- 대상: 실직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재취업 활동
- 목적: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 극복, 생활의 안정을 지원,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
- 종류: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3.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1)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1) 피보험자 신고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음

2)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적용을 받게 된 날
-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일 전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

3)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피보험자가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4)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한

- 고용보험은 근로계약에 한하여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한
-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고용보험 자격 취득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이중취득 가능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1편

### 1. 고용창출사업의 종류

####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 1) 목적

- 고용보험 적용 기업,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나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실업예방·취업촉진, 고용기회 확대, 직업능력개발 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를 지원하는 사업

#### (2)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 1) 고용창출 지원

- 통상적인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 기업 지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사전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 단, 고용촉진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는 사업 참여 신청 필요 없음

##### 2)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근로시간 단축제(실 근로시간 단축): 실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 교대근로 개편: 교대제 도입·확대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인건비지원 : 증가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 월 80만원 지원, 최대 2년간 지원
  - 임금 감소액 보전 :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 월 40만원, 증가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

##### 3) 국내복귀기업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
- 지원수준: 증가 근로자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 지원한도: 100명 이내로 지원
- 지급기간: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4)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
- 지원 요건: 근로자 채용 전 참여신청서 제출하여 사업 승인 후 채용, 만 50세 이상 실업자 신규 고용, 3개월간 고용 유지, 최저임금 이상 지급,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단,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 적합직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해당하는 것
-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
- 지급기간: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이내이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만 지원

#### 5)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여성가장, 장애인,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지원 사업
-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 지원금 지급 주기: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 (3)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청년 고용 지원」

#### 1) 청년내일채움공제(2023년 기준)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 청년 신규 고용 촉진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동시 지급 가능
- 지원 대상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고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함(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임금: 임금상한 기준 월 350만원 이하(기본급, 연장근로 수당 및 상여금 등 포함)
- 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지원 내용(청년) : 정부지원금 400만원, 기업 기여금 400만원, 근로자 적립금 400만원을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과 이자를 합산하여 받음

#### 2)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함
- 청년 요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기업규모별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후 지원금 신청, 4대 사회보험 가입,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 기업 지원 대상
  - 전년도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
  -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인원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
- 지원 수준 :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75만원(최대 1년 900만원 지원)

- 지원 한도
  - 기업 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최소 고용유지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해야 함

## 2. 고용안정사업의 종류

### (1)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

#### 1) 고용안정 지원

-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 사업참여 신청 필요: 정규직 전환지원,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지원
- 사업참여 신청 불필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2) 정규직 전환지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주어야 하며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지원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수준
  - 임금증가액 :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월 최대 60만원 지원
  - 간접노무비 :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지원

#### 3)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수준
  -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1인당 연 최대 360만원 지원
  - 참여신청일 이후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는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지원요건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재택·원격근무제는 제도 활용일에 출근(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에서 15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선택근무제는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일'이 4일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 30분 이상 단축일'이 8일 이상이어야 함
  - 전자카드, 지문인식,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관리



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 전 최근 6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초과하는 근로자
- 자녀보육·학업 등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
-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4대보험 가입, 6개월 이상 고용
- 지원 내용
  - 임금감소액 보전금 : 단축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 간접노무비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급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육아휴직 등 부여
  -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육아휴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미지급,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최초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부여 받은 1,2,3호는 추가 10만원 인센티브 지급
    - ※ 육아휴직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2022.1.1.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 대체인력 지원
  - 지원 대상: 출산전 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30일 이상 부여하는 사업주가 휴직 등의 시작일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휴직 등이 끝난 후 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022.1.1.부터 폐지)
  - 지원 내용: 대체인력 근로자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지원. 채용기간은 월 80만원 지원(※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은 2022.1.1.부터 폐지)
  - 지원 제한: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

3. 고용유지사업의 종류

(1)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

1) 고용유지지원금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이나 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지원제도
-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고용유지조치 30일전까지 관할 고용노동지방관서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결과 통보 후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 (유급 휴업·휴직의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까지 제출)
- 휴업의 지원요건: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사업장의 총 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 근로시간보다 20/100이상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를 실시하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



업수당 등 금품 지불

- 휴직의 지원 요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지원 금액: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1/2)지원, 1일 한도 66,000원
- 지급기간: 휴업·휴직의 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2편

### 1. 장년 및 고령자와 장애인 고용지원사업의 종류

#### (1) 장년 및 고령자 고용지원사업의 종류

##### 1)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요건(기업)
  -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일 것)
    - ① 정년을 연장(정년연장)
    - ②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3개월 이내 재고용(재고용)
- 지원요건(근로자)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직중인 근로자
- 지원수준 및 기간
  -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30만원, 장려금 산정 기준일로부터 최대 2년
-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해당 분기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신청절차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 (2) 장애인 고용 관련 지원사업의 종류

##### 1)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제도
- 지원내용 :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근로자 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종류

#### (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종류

##### 1) 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자와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사업주나 개인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교육을 실시하면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이나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규정에 따라 훈련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2)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 훈련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 지원내용: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100
- 집체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자체훈련(위탁훈련)지원금 기준금액 × 사업주 규모별 지원율
- 원격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 원격훈련 지원금 ×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 × 원격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 × 사업주 규모별 지원율

### 3)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 구직자: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청년취업아카데미, K-디지털 아카데미 등

### 4) 국민내일배움카드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 사업자 ‘내일배움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 발급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제외)
- 유효기간: 5년 (5년 후 재발급 가능)
- 1인당 지원한도 30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 등 저소득 계층 500만원한도 내 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전액지원)
- 훈련비의 일부는 훈련참여자가 부담하며 근로자, 사업자, 자영업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 장기훈련과정: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 단기훈련과정: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 5)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능인력 및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제도

### 6)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

### 7) K-디지털 아카데미

- 기업과 대학, 민간 혁신기관을 통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에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과정

## 육아휴직

### 1. 출산전후휴가

#### (1) 출산전후휴가

##### 1) 출산전후휴가의 의의

- 임신·출산 전후 일정한 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여 여성근로자가 임신·출산 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도록 사용자가 부여하는 휴가

##### 2) 출산전후휴가 기간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기간 배정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함 (다태아의 경우 총 120일 중 출산 후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함)

##### 3) 유산·사산휴가 기간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4)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 받아 사용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

##### 5) 출산전후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 휴가를 시작한 날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지급
- 기업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지급기간이 상이

##### 6)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기간 및 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의 통상임금 상당액을 630만원 한도에서 고용보험에서 지급 (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급여가 84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은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함
- 대규모 기업: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의 통상임금 상당액을 2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다태아의 경우 최초 75일을 초과한 45일분에 해당하는 315만원 한도에서 지급)
  - ※ 최초 60일(다태아75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상당액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함

##### 7)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 신청 서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청 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며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임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음

## 8)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가
- 배우자의 출산휴가기간: 10일(유급)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요건
  - 지급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지급기간·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 지급조건: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 신청 시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사업주의 확인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함.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됨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동안 임금 지급의 의무가 있음

## 2. 육아휴직

### (1) 육아휴직

#### 1) 육아휴직의 의의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으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임

#### 2)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
- 부모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 각각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 2회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

#### 3)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 4)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25/100)를 휴직자의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육아휴직 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5)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 신청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6) 육아휴직급여 특례(3+3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022.1.1. 이후여야 함)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7)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제한

-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
-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
-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

8) 사업주의 확인 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함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함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음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의의

-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 육아휴직과 달리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일·가정의 양립과 경력단절방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합산기간 최대 2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한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아야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액

- 지급액 산정의 근거: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정부는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
- 지급액 산정 방법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월 통상임금의 100% ×	$\frac{5}{\text{단축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월 통상임금의 80% ×	$\frac{\text{단축전 소정근로시간} - \text{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

- 신청 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적치 신청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신청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실업급여

### 1. 실업급여의 의의와 종류

#### (1) 실업급여

##### 1) 의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 2) 종류

-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상병급여: 수급자격자가 질병·부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 취업촉진수당: 구직활동을 강화하여 조기에 취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가 있음

#### (2) 구직급여

##### 1)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일용근로자)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일용근로자)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건설일용근로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 Ⅰ 용어 설명

- **기준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질병, 부상,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30일 이상 무보수 기간이 있을시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하며 이 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24개월이며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여야 하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함
- **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 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함

2) 실업의 신고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구직신청 +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 함
-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음
-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 및 실업의 신고를 하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으로 받아야 할 날(실업인정일)을 안내 받아야 함

2. 구직급여의 수급요건과 지급

(1)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1) 수급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
  - ※ 대기기간: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수급기간 연장 사유: 임신, 출산, 육아,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병역의무, 구속, 형의 집행, 본인 및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비속의 질병, 부상
- 수급기간 연장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12개월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하며 해당 기간이 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을 한도로 함

2) 소정급여일수

구분		피보험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현재 연령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3) 구직급여일액

- 구직급여일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
- 구직급여일액이 최고 구직급여일액보다 높은 경우는 이직일에 해당하는 구직급여 상한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하고, 최저 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을 경우는 최저 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함
- 상한액 : 1일 66,000원(2019.1.1. 이후)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2) 구직급여의 종류

1)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에게 구직급여일액의 100%를 2년 범위 내에서 지급
-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등을 고려

하여 생계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직급여일액의 70%를 60일 범위 내에서 지급

-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여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에게 구직급여일액의 70%를 60일 범위 내에서 지급

2)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함
-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지급이 아닌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
- 상병급여 지급가능 일수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뺀 일수
- 상병급여 지급 제외 사유: 수급자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보상, 국가배상법에 따른 휴업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의사상자보호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 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
  - 지급요건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소요되는 교통비, 식대 등을 지급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대하여 1일 7,530원을 지급함
-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의하여 원거리(편도25Km 이상)소재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 등을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급 함
-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위하여 주거를 이전할 경우 지급하고 이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야 하며 취업을 위한 이주일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정하여 취업하였어야 함. 지급액은 5톤 이하의 이사화물은 이전비의 실비,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은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이전비의 실비의 50%를 더한 금액으로 함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특례

1)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종류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제외)

2)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부득이한 사정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3) 구직급여 기초일액

- 구직급여 기초일액: 피보험기간의 기준보수액 합산 ÷ 피보험기간 총 일수
- 자영업자 피보험기간에 근로자로 고용되었던 피보험기간의 합산이 가능하며, 늘어난 일수분에 대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은 재 산정함

- 구직급여일액: 기준보수의 60%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4) 소정급여일수

5) 실업급여 지급 제한

- 해당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피보험기간에 따른 체납 횟수가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  
니함

	구분	체납 횟수
피보험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1회
	2년 이상~3년 미만	2회
	3년 이상	3회

-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보험료 체납 횟수

## 산재보험의 개요

### 1. 산재보험의 개요 및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1) 산재보험의 개요

##### 1) 산재보험의 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용어의 정의

- 업무상 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함
- 중증요양상태: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 진폐: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
- 출퇴근: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
- 유족: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 치유: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 장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

##### 3) 산재보험 적용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2018년 7월 1일 산재보험 적용 사업 확대: 상시 1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

❖ 2018.7.1. 법 개정 이전에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이었으나, 법 개정 후 당연적용 사업이 된 사업

##### •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는 제외

##### • 소규모 건설공사현장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행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 연면적 100㎡이하의 건축, 연면적 200㎡이하의 대수선 공사

##### 4) 산재보험 적용 제외

-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내 고용활동
- 농업, 임업(별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2) 업무상 재해의 종류

1)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경로 이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함
- ※ 이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2. 요양급여 신청

(1) 요양급여 신청

1) 요양급여 신청 절차

- 업무상 재해 발생 → 산업재해 신청 → 재해조사 → 업무상 재해 결정 → 업무상 재해 결정 통지

2)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

- 요양급여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 여부 결정 통지

3) 요양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둠
- 위원장 1명과 1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3.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 기준

(1)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
- 지급요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4일 이상의 요양
- 지급방법: 현물급여가 원칙, 요양비를 본인이 먼저 부담한 경우 산재환자에게 현금급여 지급 가능
- 요양급여의 범위: 진료비, 간병비, 이송료

2)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소정의 보험급여
- 지급요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일 것, 4일 이상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임금을 받지 못할 것
- 급여 산정: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

3) 장애급여

-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

4) 간병급여

-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 행하여지면, 그 장애 정도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제도

5)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며 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수급권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 50%, 연금 50% 지급 가능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 순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및 형제자매

6)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7) 장례비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 실행자에게 그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

8) 직업재활급여

- 요양이 끝난 후 장애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훈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
- 산재노동자 지원: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 사업주 지원: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2) 산재보험급여 청구권

1) 보험급여의 지급

- 산재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함

2) 보험급여 수급권

- 수급권의 보호: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음,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사업주)가 소속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피재근로자인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수급권자의 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함

3) 미지급 보험급여의 지급

-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 중 미지급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함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의 개요

### 1. 고용·산재보험징수법의 개요

#### (1) 고용·산재보험징수법의 개요

##### 1) 목적

-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용어의 정의

- 근로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 원수급인: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
- 하수급인: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
- 총 공사: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와 설명한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 공사 및 마무리 공사 등
- 총 공사금액: 총 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발주자로부터 따로 제공받은 재료의 시가환산액인 관급·사급자재대는 포함함
- 상시근로자수: 해당 보험연도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로 하고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함

##### 3)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 보험관계 적용,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산정, 산업재해 보상: 근로복지공단
- 보험료 고지·수납: 부과고지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 체납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고용센터

### 2.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적용

#### (1) 고용·산재보험 적용

##### 1) 적용대상

- 사업: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단위로서 그 목적은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 단위로 적용함을 원칙
- 사업장: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과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적용

2) 가입 범위

- 사업의 종류·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 사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의무가입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속사업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단,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어업의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은 임의가입 가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단,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별목업 제외)·어업·수렵업의 상시 5명 미만 사업은 임의가입 가능
건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원도급공사</li> <li>•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li> </ul> ① 총 공사금액 2천 만원 이상 ② 연면적 100㎡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모든 건설공사 (2018.7.1. 이후 착공하는 공사)

(2) 고용·산재보험 보험가입자

1) 보험가입자의 범위

-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사업주)란,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 개인인 경우 자연인인 대표자를 말함
- 산재보험은 사업주,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해당

2) 건설업 등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보험가입자

-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가 원수급인이 되어 보험가입자가 됨
- 국내 건설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 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는 국내의 그 최초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됨
-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하는 때에는 그 하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가 됨

3)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받아 고용·산재보험의 적용과 보험료 납부의무 등을 갖게 됨
- 승인요건: 건설업에 한함. 하수급인인 사업주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사업자, 정보통신공사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를 제출
- 승인불가: 하도급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승인 신청 전까지 원수급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 구비서류: 도급계약서 사본 1부,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1부

**(3)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1) 의무가입 사업장

- 성립일: 해당 사업이 시작된 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근로자 유형(상용, 일용, 시간제)에 상관없이 근로자 채용일부터 적용.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 성립 신고기한: 보험관계를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일의 전날까지
- 서류제출: 일반사업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초본, 근로자 명부 등. 건설공사 및 별목업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 내역서 포함), 건축 또는 별목허가서

2) 임의가입 사업장

- 성립일: 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공사 실제 착공일
- 성립 신고기한: 일반사업의 경우 임의가입이므로 성립신고기한에 정함이 없음. 건설공사 및 별목업의 경우에는 사업 종료일의 전날까지
- 서류제출: 일반사업은 보험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초본, 근로자 명부 등. 건설공사 및 별목업은 보험가입신청서,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 내역서 포함), 건축 또는 별목허가서

3) 동종 사업의 일괄 적용

- 의의: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2개 이상의 당해 사업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 적용함으로써 보험 사무에 대한 절차적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 당연 일괄적용의 요건: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사업자,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사업자, 소방시설공사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및 면허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업으로써 계속적으로 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업
- 임의 일괄적용의 요건: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산재보험의 경우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에 한함. 건설업의 경우 관련법에 의한 당연 일괄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당연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동일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일괄적용 가입이 가능함

**(4)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1) 보험관계 유지

- 전년도 일괄적용을 받던 사업주는 일괄적용 관계가 해지되지 않는 한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 일괄적용 관계가 유지

2) 사업개시 신고

-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 함
- 일괄 적용을 받는 건설사업주는 원도급공사 계약 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함

3) 일괄적용 해지

- 일괄적용을 승인 받은 보험가입자가 승인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일괄적용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일괄적용관계 해지의 효력은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발생

### 3. 고용·산재보험료율의 결정

#### (1) 고용보험료율

##### 1) 실업급여

- 모든 사업장이 동일한 보험료율 적용
- 보험료율 1.8%(2022.7.1. 이후 적용)

#####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해당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로 결정
- 150명 미만 기업 0.25%, 150명 이상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명 이상~1000명 미만 기업 0.65%, 1000명 이상 기업·국가·지방자치단체 0.85%

#### (2) 산재보험료율

##### 1) 산재보험료율

- 사업의 종류별로 매년 고시·적용

##### 2)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 전 업종 동일하게 보험료율 1.0/1,000

##### 3) 산재보험료율 적용 방법

-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 적용

##### 4) 임금채권부담금

- 의의: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사업을 위한 부담금
- 적용범위: 산재보험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및 별정우체국은 적용 제외
- 부담금 비율: 부담금 비율은 업종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0.6/1,000
- 사업주가 퇴직금을 미리 근로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였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연금제도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업장은 부담금을 경감

##### 5) 석면피해구제 부담금

- 의의: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석면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
- 적용범위: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주(건설 본사는 상시인원과 관계없이 부과). 건설업 사업주(사업의 일괄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제외)
- 부담금 비율: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 0.04/1,000

#### (3) 산재보험료율 결정

##### 1) 개별실적요율

- 동종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간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 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적용
-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백분율(보험수지율)이 75%이하이면 산재보험료율을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85%가 넘어가면 산재보험료가 최대 20%까지 인상됨
- 적용대상: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경과한 사업. 건설업 및 별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 전 총 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2) 산재예방요율

-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 촉진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는 제도
-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인 사업

4.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변경 및 소멸

1) 보험관계의 변경

-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변경 신고를 해야 함
- 변경 내용: 사업주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포함), 사업의 기간, 상시근로자수

2) 보험관계의 소멸

- 사업주는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소멸 신고를 해야 함
- 소멸 사유: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직권소멸, 임의가입 보험계약의 해지 신청,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일괄적용의 해지
- 보험관계 소멸일

소멸사유	소멸일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직권소멸	직권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보험계약해지	보험계약해지를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보험관계의 소멸 효과: 소멸시점 이전의 미납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되지 않음, 보험관계가 소멸되기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청구 가능,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였던 근로자는 실업급여 청구권 존속

## ❖ 고용 · 산재보험 특례적용

### 1.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 (1) 자영업자 고용보험 특례

##### 1)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 가능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실제 사업 영위(고유번호증만 갖춘 경우 가입 제한)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소규모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자(단,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로 이중 취득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입 가능)

##### 2) 가입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가입신청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
- 보험료 및 본인이 원하는 혜택 수준을 고려하여 기준보수 선택
- 보험관계 성립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 3) 보험료 산정

- 월보험료 =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  
 =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액 × 실업급여 보험료율 2%) +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액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0.25%)
- 기준보수는 연도 중 변경 불가
- 다음 보험 연도에 적용할 기준보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 20일까지 변경신고 가능

##### 4) 보험관계 해지

- 당연 소멸: 폐업, 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 임금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용근로자로 피보험자격 취득 희망 시 포함),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보험관계 해지 신청 시 자영업자 보험관계도 해지
- 임의 소멸: 자영업자의 보험관계 해지 신청(가입연도 중에도 해지 가능), 보험관계에 대한 공단의 소멸 결정·통지

##### 5) 보험관계 소멸일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을 결정, 통지한 날의 다음 날
- 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취득일 당일
- 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 시 마지막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 날



(2) 자영업자 고용보험 특례 혜택

1) 실업급여 지급 수급요건

- 본인 명의로 가입한 사업자등록증 말소(실업상태)
-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건강 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그만 둔 경우

2) 실업급여

- 구직급여일액을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
- 구직급여일액: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60/100을 곱한 금액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3) 실업급여 지급 제한 사유

-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 미납: 고용보험 가입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보험료 체납 횟수'이상 체납한 경우 지급 제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보험료 체납 횟수		
피보험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1회
	2년 이상 ~ 3년 미만	2회
	3년 이상	3회

※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최초의 실업 인정일까지 체납한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을 전부 납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함

2.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1) 의의

- 실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와 같이 재해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포함)등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적용범위

- 중소기업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 가입당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가입 후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 되어도 해당 보험연도에는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2제2호에 따름
- 가족종사자

▪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가입대상 사업장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장에서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시행일 2021.6.9.)

3) 가입신청 및 승인

-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분진·진동·연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를 행하는 경우) 건강진단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보험관계 성립일 =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
- 사업주가 둘 이상(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주가 가입하여야 산재보험 보호 가능
-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 모두에 가입하여야 모든 사업에서 산재보험 보호 가능
- 가족종사자의 경우 가입신청 확인서 및 가족관계를 증빙할 서류 추가 제출

4) 보험료 산정

- 월 보험료 = 월 단위 보수액 ×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 월 단위 보수액: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며 선택한 평균임금이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됨

5) 보험관계 해지

-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음

6) 보험관계 소멸일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근로자를 사용하였던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 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보험계약의 해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보험가입을 신청한 해당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 불가)
-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 보험가입자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

7) 산재보험 보험급여 지급제한

-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 산재보험 보험급여 지급이 가능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산재보험 특례 적용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

- 산재보험 특례로 산재보험 가입은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적용 대상이 아님. 단,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수급 가능
- 적용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쿼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택배지·간선기사, 유통배송기사,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2) 보험관계 성립

- 일반근로자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근무하는 사업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함
- 일반근로자 고용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된 사업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불필요

## 3) 입직신고

- 입직일: 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날, 법 시행일 이전부터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법 시행일, 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직으로 주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는 이직일의 다음 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서로 입직 신고를 하여야 함

## 4) 이직신고

- 이직일: 이직 또는 사망에 의한 경우는 이직 또는 사망한 날,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이 폐지 또는 끝난 날, 둘 이상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게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된 사업장이 나중에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나중에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 입직일의 전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신고서로 이직신고를 하여야 함

##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부과
- 월 보험료 = 월 보수액(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름) ×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1/2, 종사자1/2을 부담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 일반근로자가 있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일반근로자의 월 보험료와 합산하여 부과하며, 사업주는 그 달의 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월 중간에 입직하거나 이직한 경우 그 달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함

##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질병,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함

## 7)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 해외파견자를 보험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법을 적용
- 적용 대상: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자
- 적용 방법: 보험 가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해외파

견자 명단, 해외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해외파견기간, 해외파견자의 업무 내용,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기록)

- 성립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파견예정자는 출국일이 성립일이 됨)

####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 1) 적용대상

- 노무제공자 :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 적용대상 직종 :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킥서비스기사(플랫폼 이용 노무제공자 포함), 대리운전기사(플랫폼 이용 노무제공자 포함),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골프장캐디

##### 2) 보험관계 성립

-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연적용
- 보험가입자 : 노무제공자와 이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 사업주는 노무제공자를 사용함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최초의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를 채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해야 함

##### 3) 적용제외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연령과 소득으로 한정
  - 65세 이후에 신규계약자 적용제외
  -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 ※ 월 보수액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중 노무제공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노무제공 개시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하는 보수액

##### 4) 적용사업

- 실업급여 사업만 적용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미적용(모성보호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만 적용)

##### 5) 피보험자격 취득일

- 노무제공시작일 : 노무제공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시작한 월의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노무제공을 시작한 첫 날
- 소득기준(월보수액 80만원) 충족일의 초일

##### 4) 피보험자격 상실일

- 실제 이직으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하는 경우
  - 이직일의 월보수액 80만원 이상 : 노무제공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날
  - 이직일의 월보수액 80만원 미만 :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인 달의 초일
- 이직하지 않았으나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으로 피보험자격 상실하는 경우
  -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달의 초일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

- 월별보험료 = 노무제공자 개인별 월보수액 × 1.6%의 합계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 0.8% 균등 부담
- 노무제공 특성에 따라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건설기계조종사, 골프장캐디, 화물차주)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으로 직종별 기준보수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월별보험료 부과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의 적용

### 1.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자

#### (1) 근로자 가입 대상자

##### 1) 가입 대상자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함
-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며, 근로의 내용이 정신·육체노동이거나 또는 상용·일용·임시직 등 근무 형태를 불문
-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2)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는 적용제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됨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대상으로 고용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포함한 보험료 부과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65세 이후에 퇴직 후 근로 단절 없이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 근로자임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해야 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재보험도 동일)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 받는 자는 교직원을 말함.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않는 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임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 근로자: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체류자격이 방문취업 또는 비전문취업인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시기에 따라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당연적용

고용보험 적용여부	외국인의 체류자격
강제적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임의적용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상호주의 적용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 3) 산재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고용보험도 동일)

4) 근로자 특성에 따른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여부 판단 사례

- 학생: 휴학을 하고 근로제공에만 전념하거나 근로제공을 주업으로 하고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 고용보험적용 대상이 됨. 주간학생이라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는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며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연속 근무 시 고용보험에 가입 대상임
- 친족: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 아님. 그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 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 된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능
- 성직자: 목사, 전도사, 승려, 신부, 수녀 등의 성직자는 순수종교인으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고용·산재보험 적용 제외

2) 둘 이상 사업에 동시 고용

-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산재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적용
-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방법은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결정

2.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종류와 신고 내용

1)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고용신고)

-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함
- 신고기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내용: 근로자 자격취득일, 월 평균보수, 직종부호, 주 소정근로시간, 계약종료연월

2)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고용종료신고)

-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함
- 신고기한: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내용: 상실연월일, 상실사유 및 구분코드, 당해연도 보수총액(보수총액신고 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 기재)



대분류	상실사유 및 구분코드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 26.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3) 이직확인서

- 실업급여의 수급과 관련된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 전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이직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지원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로 발급해주어야 함(20.08.28. 시행) (상실신고가 되어야만 처리 가능)
- 신고내용: 이직일, 이직사유,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임금계산기간, 총일수, 임금내역,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 상실일의 전날
  - 이직사유: 이직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상실사유 구분코드를 참고하여 기재
  - 피보험단위기간: 보수지급 기초일수의 총합계를 기재하여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때는 180일로 기재
  - 임금계산기간: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3개월)을 사업장별 임금계산 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
  - 총일수: 임금계산기간의 총일수(90~92일)를 기재하되 평균임금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일수는 공제
  - 임금내역: 매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구분하여 기간별로 기재
  - 1일 소정근로시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재

4) 근로내용확인신고

-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 취득(고용) 및 상실(고용종료) 신고를 한 것으로 봄
- 일용근로자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함. 근로자가 조기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
- 신고내용: 직종부호, 보수총액, 임금총액, 이직사유코드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별로 각각 신고</li> <li>•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동시에 신고</li> <li>•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건설업 및 별목업)은 고용보험만 신고</li> <li>• 외국인 일용근로자(산재보험은 모두 적용, 고용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적용)</li> <li>•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신고도 일괄 신고 가능 필수 사항은 아니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신고내용을 기재</li> <li>• 건설업의 경우에 한하여 고용관리책임자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지정·신고</li> </ul>

5) 근로자 휴직 등 신고

-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

휴업·휴직기간 동안의 보수

	산재보험	고용보험
월별보험료 부과	X	X
정산보험료 부과	X	O
보수총액신고 합산	X	O

- 신고내용: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업 및 휴직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휴직사유

6) 근로자 정보 변경 등 신고

-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종료일,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 자격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
- 근로자의 취득일, 상실일, 전근일, 휴직시작일, 휴직사유, 주소정근로시간, 직종, 상실사유,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평균임금 등의 내용에 정정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가입정보 정정 신청서로 신고
- 근로자 취득, 상실, 전근, 휴직 등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 고용취소신청, 근로자 고용종료취소신청, 근로자휴직취소신청, 근로내용확인신고취소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 부과고지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및 납부

### 1.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 (1) 고용·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

##### 1) 보험료 산정

###### • 부과고지 사업장

-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 한다.

㉠ 고용보험료 =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실업급여 보험료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 출퇴근재해 보험료율)

###### • 자진신고 사업장

- 건설업과 별목업은 사업주가 직접 당해연도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개산보험료)을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납부한다.

##### 2) 보험료 부담

###### ①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

※ 다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 전액부담

###### ② 산재보험료 : 사업주 전액부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

##### 3) 보수의 정의

-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①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물을 말한다.

###### ②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시간외 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다음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음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의 식대

- 법령, 조례에 의하여 착용하여야 할 자가 지급받은 제복, 제모, 제화

- 특수작업 또는 직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병원, 시험실, 금융기관, 공장, 광산 등)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보조금

㉦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다음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음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가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월 20만원 한도의 금액

③ 비과세 소득

- 비과세 소득의 성격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여부가 다름

2.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방식

(1)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방식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13조(보험료)

①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징수한다.

-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① 제13조①에 따른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과 임업 중 별목업은 월별 부과·징수 제외 대상 사업장으로 건설업 등의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2)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방식 비교

부과고지	비교	자진신고
월별 보험료 고지		개산·확정보험료 신고, 납부
전 사업(건설업 등의 사업 제외)		건설업(건설본사 포함), 임업 중 별목업
해외파견(건설업 외)		해외파견사업(건설업)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부과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징수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신고	보험료 정산 (신고기한)	매년 3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험료 신고

3.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산정과 납부

(1) 월별 보험료 부과

1) 월별 보험료 산정

-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보험료 합계가 사업장 월별 보험료가 된다.

2) 월별 보험료 부과 절차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달 15일까지 고용신고, 고용종료신고, 근로자 정보변경신고, 월평균보수변경 등 신고</li> <li>일용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매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li> </ul>
↓	
근로복지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달 15일까지 신고접수 마감 및 처리</li> <li>매달 15~18일 고용·산재보험 월별보험료 산정 및 부과자료를 구축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보험료 고지 데이터 전송</li> </ul>
↓	
건강보험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달 22일 고지서 출력 및 발송</li> </ul>
↓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달 10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li> </ul>

3) 월별 보험료 일할 계산

가. 월별 보험료가 일할 계산되는 경우

-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 근로자의 휴직 등 근무 변동이 월의 중간에 걸쳐있는 경우
-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나. 월별 보험료 일할 계산식

$$\text{월평균보수} \times \frac{\text{근무일수}}{\text{월의총일수}} \times \text{보험료율}$$

4) 월평균보수 산정방법

고용일	월평균보수 산정방법	적용기간
전년도 12월12일 이전	$\frac{\text{전년도 보수총액}}{\text{전년도 근무개월수}}$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전년도 1.1.~12.12.이고 고용월 근무일수가 20일 미만	$\frac{\text{전년도 보수총액}}{\text{전년도 근무일수}} \times \frac{\text{전년도 근무일수} - \text{고용월 근무일수}}{\text{고용월을 제외한 근무개월수}}$	
전년도 12월13일 이후	$\frac{\text{근로개시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12\text{개월}}$	고용일이 속한 달 다음연도 3월까지

5) 월평균보수 변경

가.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

- 인상인하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
- 착오 : 근로복지공단에서 월평균보수 착오 산정하거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착오 신고한 경우

나. 월평균보수 적용

- ① 서식: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② 적용: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월평균보수 적용월을 기재, 해당 월부터 적용
- ③ 선택 : 의무신고사항 아님, 보수총액신고를 통한 정산 가능

4.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정산

(1)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정산

1) 보험료 정산 개념

- 당해연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 납부
- 다음연도: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신고받아서 확정된 보험료를 산정
  - 당해연도 납부한 보험료 < 당해연도 보수총액으로 정산한 보험료 -> 추가 납부할 보험료 발생, 다음 월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고지
  - 당해연도 납부한 보험료 > 당해연도 보수총액으로 정산한 보험료 -> 돌려받을 보험료 발생, 다음 월별 보험료에 충당(또는 반환)
  - 당해연도 납부한 보험료 = 당해연도 보수총액으로 정산한 보험료 ->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보험료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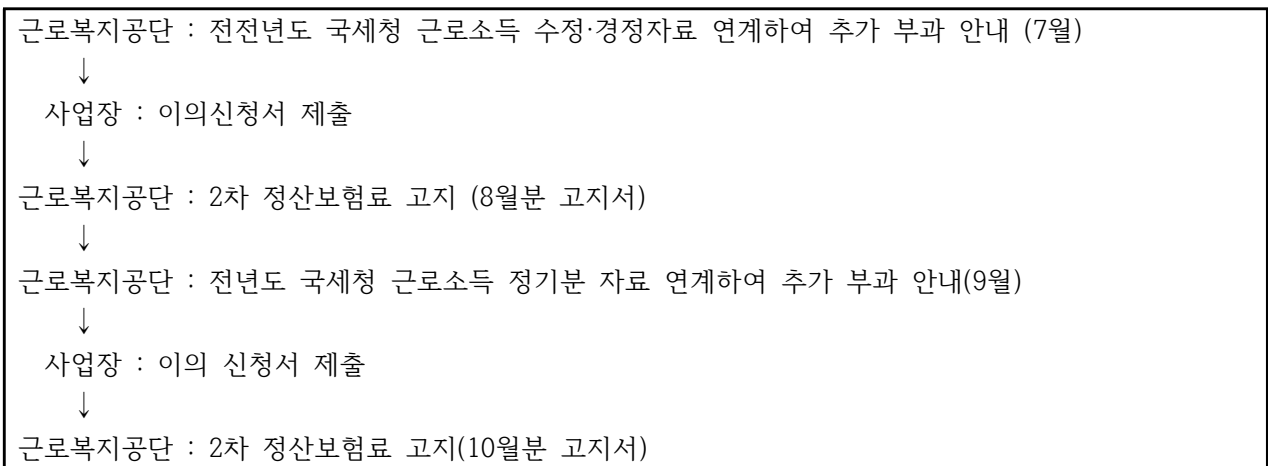
(2) 보수총액신고

1) 보험료 정산 방법

- ① 매년 3월 15일까지 사업주가 전년도 보수총액신고
- ② 4월 월별보험료에 보험료 정산 반영 (추가 부과, 충당 또는 반환)
- ③ 4월 월별보험료를 5월 10일까지 납부

2) 부과고지 사업장 정산

-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와 연계하여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신고내용 확인, 차액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3)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 ① 사업장 정보 : 보험관리번호, 사업장명칭 등
- ② 근로자별 보수총액
  - 보수총액신고 대상자가 다른 경우, 고용(취득)신고 또는 고용종료(상실)신고를 처리한 후 보수총액신고

- 전년도에 발생한 근로자별 보수총액 작성(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16)번 합계 금액)
  - 연간보수총액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각각 작성
  -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 없음'선택하여 신고해야 함
  -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보수도 합산하여 신고
- ③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여부 선택 가능

## ❖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및 납부

### 1.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 (1) 고용·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

##### 1) 보험료 산정

###### • 자진신고 사업장

- 건설업과 별목업은 사업주가 직접 당해연도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개산보험료)을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납부
- 고용보험료 = 당해연도 보수총액 추정액 × (실업급여 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산재보험료 = 당해연도 보수총액 추정액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 출퇴근재해 보험료율)

##### 2) 보험료 부담

###### ①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

※ 단,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미징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 전액부담

###### ② 산재보험료: 사업주 전액부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

### 2. 건설업의 보험료 정산

#### (1)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료 정산

##### 1)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와 납부의 특징

- ① 가입 첫해: 당해연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예상하여 보험료를 신고·납부 (개산보험료 신고액)
- ② 다음 해: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확정하여 보험료를 정산 (확정보험료)  
당해연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예상하여 보험료를 신고·납부
- ③ 그 다음 해: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확정하여 보험료를 정산  
당해연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예상하여 보험료를 신고·납부  
→ 본사(사무실)와 건설일괄(공사) 각각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 2) 고용·산재보험료 정산

- ① 개산보험료 신고액 < 확정보험료: 전년도 보수총액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 초과한 보수총액만큼 보험료 추가 납부
- ② 개산보험료 신고액 > 확정보험료: 전년도 보수총액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 중 초과 납부한 보험료는 총당(반환)
- ③ 개산보험료 신고액 = 확정보험료: 예상보수총액과 확정 보수총액이 동일

##### 3) 확정보험료

- 매 보험연도의 총일(보험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연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산정 방법

	고용보험	산재보험
본사	사무실 상주 근로자 보수 + 본사 소속 현장파견 상용근로자 보수	사무실 상주 근로자 보수
건설일괄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공사비 × 하도급 노무비율)	본사 소속 현장파견 상용근로자 보수 +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공사비 × 하도급 노무비율)

5) 건설업 확정정산

가. 근로복지공단과 보험 가입자 간에 당해 보험년도의 개산보험료액과 확정보험료액과의 차액에 대해 추가 징수, 반환 관계를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

나. 정산 절차

- 근로복지공단: 매년 말일까지 다음연도의 확정보험료 정산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정산 사업장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을 지역본부장에게 전달
- 지역본부장: 선정된 정산대상 사업장을 관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선정사유와 정산 실시일자, 조사자 등을 서면으로 해당 사업장에 통지 (서면정산 실시 결과 적정할 경우 현지 조사 제외 가능)

다. 정산대상

- ① 보험료신고서의 확정보수(임금)총액과 사업개시공사금액에 의한 보수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장
- ② 보험료신고서의 확정보수(임금)총액과 국세청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의 보수(임금)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장
- ③ 전년도 개산보험 신고액 대비 반환 또는 총당액이 높은 사업장
- ④ 최근 3년 동안 조사대상사업장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장
- ⑤ 세무비리 등 각종 신고에 있어서 잡음이 많은 사업장
- ⑥ 보수(임금)총액이 불명확한 사업장
- ⑦ 조사,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라. 검토자료

- ① 재무제표 상의 손익계산서 및 공사업가명세서 등의 원가명세서
- ②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③ 계정별 원장(매출(공사수입금), 급여, 지급수수료, 원재료비 등 각종 원장)
- ④ 건설협회에 신고한 기성실적내역 등

마. 정산기준

- ① 전년도 확정보험료에 한하여 실시하지만 정산계획에 따라 정산대상 사업장 선정 후 다음연도에 실시하는 사업장은 전전년도에 대하여 실시
- ② 전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정산실시 결과, 산재 및 고용보험료의 추가징수 합계액이 신고액 대비 10% 이상 발생 또는 추가징수 합계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가 끝나는 기간까지 정산. 단, 추가징수 합계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6)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산정 시 유의사항

- ① 대표자 보수 제외
- ② 건설일괄 보험료 신고 대상 공사 : 자기공사, 원도급공사, 하도급 받은 공사 중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
  - 미승인 하도급공사에서 발생한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 납부주체는 원수급인이므로 건설일괄 보험료 신고

대상공사에서 제외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의 보험료 신고·납부주체는 하수급업체임
- ③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공급받은 현장인력(잡급) 비용을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였더라도 건설일괄사업장(건설현장) 노무비(보수)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 ④ 현장소장·기사 등 본사소속 현장 근무자 보수는 건설일괄사업장(건설현장)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해야 함
- ⑤ 현장소장·기사 등 본사 소속 현장 근무자 보수는 건설 본사에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를 신고해야 함
- ⑥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
- ⑦ 본 공사종료 후 하자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원수급인이 직접 사용 근로자 보수(직영노무비)는 원수급인의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 포함하여야 함
- ⑧ 공동도급공사는 원가배분내역서의 노무비(보수) 및 외주공사비에 노무비율을 곱한 보수총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 ⑨ 전체 하도급 공사현장의 실 보수가 모두 파악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 보수 기준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하나, 전체 하도급 공사 현장 중 일부 하도급 공사현장의 보수만 파악되는 경우에는 전체 하도급 공사금액(외주공사비)에 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을 곱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여야 함
- ⑩ 실제 외부공사 또는 노무비이나 재료비,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등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여 보수총액에서 누락하고,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와 외주공사비의 하도급노무비율만 신고하지 않도록 해야 함
- ⑪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적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외주공사비 등을 보수총액 산정시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함

#### 7) 확정보험료 신고

가. 신고기한

-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 신고방법

-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

#### 8) 확정보험료 납부

가. 납부기한

-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
- ※ 확정보험료는 개산보험료 신고액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은 경우 발생
- ※ 확정보험료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동일

나. 납부방법

- 신고한 보험료는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자진납부
- 일시납부

#### 9) 개산보험료

- 가. 보험가입자가 1년간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그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나. 해당연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추정액 산정방법
- 해당연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추정액이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의 70~130% 이내인 경우는 해당연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을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 해야 함

#### 10)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추정액 산정 방법

- ① 전년도의 사업규모가 비슷할 경우  
해당연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 동일
- ② 전년도 대비 사업 규모가 축소될 경우  
해당연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보다 30% 초과 감소
- ③ 전년도 대비 사업 규모가 확대될 경우  
해당연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보다 30% 초과 증가
- ④ 건설공사에서 보수총액의 추정이 곤란한 경우  
총 공사금액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 → 보수총액 추정액  
※ 노무비율에 의한 보수의 산정대상
  - 자진신고 사업장
  -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11) 개산보험료의 신고

##### 가. 신고기한

- 해당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그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 나. 신고방법

-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

#### 12) 개산보험료의 납부

##### 가. 납부기한

- 해당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 보험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 나. 납부방법

- 신고한 보험료는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자진납부
-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계속사업장 또는 6월 말 이전 성립된 사업장)
  - ※ 일시납부한 경우 개산보험료의 3% 경감
  - ※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연 4회 가능 (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횟수를 2~3회로 조정)

## 2. 건설업의 보험료 납부

### (1)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1)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 1기 (1.1.~3.31.): 3월 31일
- 2기 (4.1. ~ 6.30.): 5월 15일
- 3기 (7.1. ~ 9.30.): 8월 15일
- 4기 (10.1. ~ 12.31.): 11월 15일

#### 2) 보험료 납부방법

-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뱅킹), 신용카드(체크카드)

### 3. 벌칙

#### (1) 과태료

- 1) 보험료 신고와 관련된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①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 ② 보수총액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 ③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
  - ④ 보험료의 성실신고를 위해서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 ⑤ 보험료의 성실신고에 대한 조사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가산금

- 1) 부과요건
  - 확정보험료를 법정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징수해야 할 보험료액의 10/100을 가산금으로 부과
- 2) 부과액
  - 징수해야 할 보험료액의 10/100 부과

#### (3) 연체금

-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을 미납할 경우 부과
- ① 납부기한 경과 1일부터 30일까지는,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1,5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
- ② 납부기한 경과 30일 초과 시에는 1일 경과마다 1/6,000 가산
  - ※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50/1,000을 넘지 못함

#### (4) 보험급여액의 징수

- 1) 의의
  -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의 신고나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함
- 2) 징수요건
  - ①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 지급
  - ②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 지급
    - ※ 지급대상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3) 징수액
  - ①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50/100
  - ②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재해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 중 급여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10/100
- 4) 상한액
  -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또는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 근로자 건강보험 적용

### 1. 건강보험제도 알아보기

#### (1) 건강보험제도 특징

- ① 전 국민 건강보험
- ② 강제가입주의
- ③ 단기보험
- ④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료보장
- ⑤ 보험료와 급여의 소득재분배 기능

#### (2) 건강검진

##### 1) 건강검진의 실시대상

###### ① 일반건강검진

- 가입자: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및 사무직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해당연도 대상자  
(전년도 미수검자, 당해연도 신규 취득자도 검진가능)
- 피부양자: 만 20세 이상자 중 출생연도(짜,홀수) 기준 대상자
- 전년도 대상자 중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미수검자가 검진을 희망할 경우, 당해연도 검진 가능

###### ② 암 검진

- 출생연도(짜,홀수)에 따른 암 종목별 검진연령 및 검진주기를 만족하고,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구분	자궁경부암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폐암
대상기준	만20세이상	만40세이상	만40세이상	만40세이상 고위험군	만50세이상	만54세~74세 고위험군
검진주기	2년	2년	2년	6개월	1년	2년

###### ③ 영유아검진

- 대상: 6세 미만 (생후 4개월 ~ 71개월 이하)의 영유아
- 검진횟수: 총10회 (일반검진 7회 + 구강검진 3회)
- 검진시기: 4,9,18,30,42,54,66개월
- 검사항목: 신체계측 및 진찰,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등
- 검진비용: 본인부담 없음

##### 2) 건강검진의 실시기간 및 비용

###### ① 일반건강검진

-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 확진검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만 실시)
-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

###### ② 암 검진

- 1단계 검사: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 2단계 이상 검사: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 건강보험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건강보험공단 전액부담)

**(3) 건강검진 실시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

1) 사업주의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 의무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사무직 근로자: 2년에 1회 건강진단 실시 / 기타직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실시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사업주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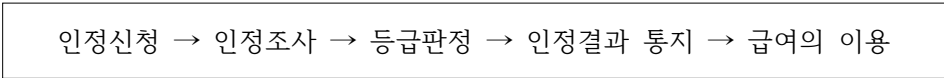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고령이나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 등이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수급자의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

2)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자



**2. 건강보험 적용대상 알아보기**

**(1) 건강보험 적용대상**

- 직장보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소득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임금소득자와 그 가족이 대상
- 지역보험: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민, 도시자영업자 등 지역주민

1) 적용대상

- 사용자: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으로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그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2) 사업장 적용대상

-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

3) 사업장 적용일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4) 사업장 적용신고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서류
  - 사업장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5) 사업장 변경신고

- 사업장 명칭,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물수령지 등이 변경된 사업장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서류 : 사업장 변경신고서

6) 사업장 탈퇴

대상	사업장 탈퇴일
휴·폐업 사업장	휴·폐업 사실증명원의 휴·폐업일의 다음날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조업 종료일의 다음날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비상근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최종 직장가입근로자의 자격상실일자
사업장 합병·통합 등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	합병(통합)계약서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합병(통합)일자
대표자 사망 사업장	대표자 사망일의 다음날

7) 사업장 탈퇴신고

- 신고의무자: 사용자
- 신고기한: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 신고서류: 사업장 탈퇴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3. 근로자 건강보험 적용신고하기

(1) 근로자 건강보험 적용신고하기

1) 직장가입자 적용대상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2)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

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

3) 근로자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

가. 자격취득일

- ① 근로자: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된 날
- ② 사용자: 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또는 사용자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된 날

나. 신고의무자: 사용자

다. 신고기한: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라. 신고서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4) 근로자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

가. 6개월 이상 지연신고의 경우

- 제출사유: 근로자의 입사시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 서류 예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출근부, 인사서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원 등 자격취득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 재외국민

- 외국인·재외국민: 외국인등록증
-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5)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 가입 제외 신청

① 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중 다음에 해당되어 건강보험 제외하는 자
  -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② 자격상실일

- 직장가입자 가입 제외 신청한 날
  - 단, 자격취득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경우, 자격취득일

6)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

- 대상 체류자격: D-3(기술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 장기요양보험 가입은 제외, 건강보험 가입은 유지
- 신청절차: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7) 근로자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 자격상실일

- ① 적용사업장에서 퇴직·퇴사한 날의 다음 날
- ②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③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④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 ⑤ 유공자등의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 신고의무자: 사용자



- 신고기한: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서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2) 피부양자의 자격 신고하기

1) 피부양자 인정요건

부양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li> <li>• 단, 형제·자매인 경우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로 재산·소득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로 인정</li> </ul>
재산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이하 재산)이 5억4천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li> <li>• 형제·자매는 재산 1억8천만원 이하</li> </ul>
소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소득(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의 합계)을 합하여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li> <li>•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는 500만원 이하)</li> <li>•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의 연간합계액이 500만원 이하</li> </ul>

2) 피부양자 자격 박탈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소득금액 발생
-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초과
-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3) 피부양자 자격 취득시기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 취득일이나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 ①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 ② 90일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4)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

- 신고의무자: 직장가입자
- 신고기한: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하게 된 때 지체 없이 신고
- 신고서류
  - ① 가입자와 동시 신고: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② 가입자와 별도 신고: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 ※ 첨부 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 가족이 본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 혼인관계증명원: 미혼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경우(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 가족이 동거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미제출)

5) 피부양자 자격 상실신고

- 신고의무자: 직장가입자
- 신고기한: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제외된 때 지체 없이 신고

▪ 신고서류

- ①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 ②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될 때에는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 생략

(3) 임의 계속 가입 제도

1) 임의계속가입제도란?

- 직장가입자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직장에서 납부하던 본인부담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많을 경우, 퇴직 전 직장에서 납부하던 본인부담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임의계속 가입제도 신청 가능
  - ※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임의계속 가입대상이 아님

①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

퇴직 월을 포함하여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50%(경감) + 소득월액 보험료(보수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시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

② 혜택

-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로 납부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③ 대상자

-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사람으로서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년(365일)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신청한 사람

④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⑤ 신고서류 :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⑥ 적용기간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 건강보험료 산정

### 1. 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 (1) 건강보험 자격취득과 보험료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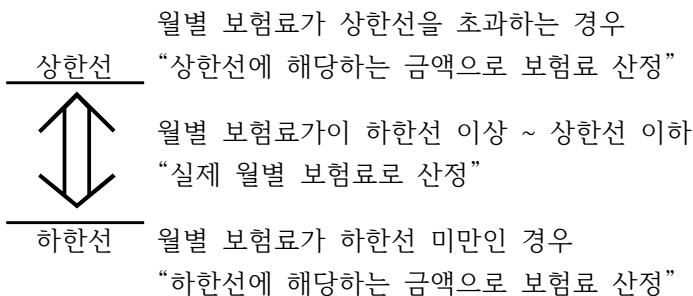
1) 근로자가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보험료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징수. 단, 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보험료 징수

2)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다면, 각 사업장에서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3) 건강보험료 산정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보수월액: 연간 보수총액 ÷ 근무월수
-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연도별 고시
- 건강보험료 부담비율: 가입자 부담 50% + 사용자 부담 50%
- 장기요양보험료: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 기재하여 건강보험료에 합계금액을 고지

#### 4) 건강보험의 월별 보험료 상·하한



#### 5)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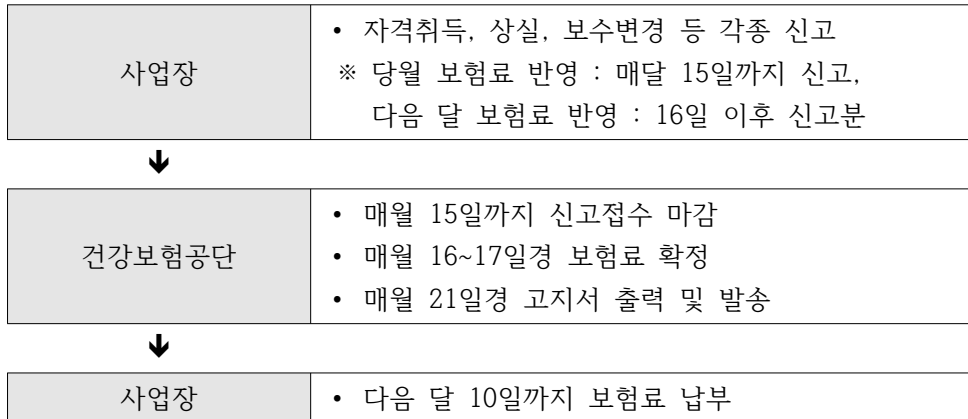
① 경감대상: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가입자가 있는 경우

#### ② 경감 적용방법

-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건강보험공단 장애인 D/B를 전산 연계하여 일괄 경감 적용
- 희귀난치성 질환 6종: 공단 보유 산정특례 등록 자료를 활용한 전산 연계 경감 적용 및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신청서에 해당 질환을 입증하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경감 신청

(2) 건강보험료 산정과 고지

1) 건강보험료 고지 절차



2.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1) 보수월액 신고

1) 연도 중 신규 자격취득자의 보수월액 산정방법

연·분기·월·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	→	$\frac{\text{보수월액}}{\text{그기간의 총일수}} \times 30$
일·시간·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	→	당해 사업장에서 가입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자의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위 방법에 의하여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자	→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받는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2) 보수월액 변경 신청

- 보수월액 변동이 있는 경우 연도 중 수시로 신고 가능
-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통하여 보험료 연말 또는 퇴직 정산 시 추가 또는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줄임으로써 가능한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함
-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경신고 의무화 시행 중(2016.01.01. 시행)

3)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경우
  - ① 해당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 ②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신고한 금액
 ※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의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보다 낮을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최고 보수월액으로 사용자 보수월액 결정

(2)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 1) 휴직자 등에 대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 신청대상

- 육아휴직, 질병휴직, 무급노조전임자 휴직, 산재휴직, 병역을 위한 휴직, 학업을 위한 휴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자
- 2)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 신청서식
  -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
  -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기간 보험료 부과
    - ① 고지유예 사유 발생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기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② 정산 전 보수월액은 고지유예 적용일 현재 적용받고 있던 보수월액을 의미
  -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기간에 대한 보험료 납부
    - ① 복직 등으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사유가 없어져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신청서’ 제출 시 보험료 부과
    - ② 휴직자 휴직기간 보험료는 신청대상에 따라 차등 경감
- 3) 휴직자 휴직기간 보험료 경감
  - 경감대상: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 경감적용기간: 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복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 단,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휴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복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전달까지 적용
  - 경감률: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

### (3) 건강보험법상 보수의 범위

- 1)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 근로자 등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중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것
- 2) 식대
  - ① 비과세 인정기준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연간240만원) 이하 식대
  - ② 과세인 경우
    -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고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물은 비과세, 현금은 과세 대상으로 현금은 보수에 포함
- 3)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 ① 비과세 인정기준
    - 근로자 본인이 소유하거나(부부공동명의 차량은 적용, 가족 공동명의 차량은 적용 제외) 임차한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 경비를 당해 사업장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② 과세인 경우
    - 근로자 소유차량으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교통비는 보수
- 4)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 ① 비과세 인정기준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 한도
  - ② 과세인 경우
    - 월정액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대상이므로 보수에 포함

5)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 받는 급여

① 비과세 인정기준

-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는 보수에서 제외

② 과세인 경우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보수에 포함

※ 건강보험 연말(퇴직)정산 신고 시,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연말(퇴직)정산 근무월수에 포함

6) 보육수당·출산수당

- 비과세 인정기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7) 외국인교사가 지급받는 급여

- 전액 보수에 포함 (월 급여, 정착금, 항공료, 입·출국 지원비 등)

8)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국세청 신고 방법

- 내국인과 동일한 연말정산, 단일세율에 의한 세액 정산

- 단일세율 적용

-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간급여를 신고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한 보수총액신고 시에는 보수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3. 건강보험료 정산

#### (1) 보험료 정산

1) 수시정산

- 직장가입자의 자격 또는 보수 등의 변동 신청이 지연되었을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부과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 징수 또는 반환하는 절차

2) 퇴직정산

- 연도 중 직장가입자가 퇴직할 경우, 기 납부한 보험료와 당해 연도 퇴직 시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간의 정산 실시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함

3) 연말정산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 해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보험료를 추가징수, 반환하는 절차

① 정산시기

- 일반근로자: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 매년 5월 말일까지 신고

② 신고서류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③ 정산대상자

-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④ 정산 제외 대상자

- 퇴직자
- 해당연도 12월 중 입사자 (12월 보험료 면제자)
- 해당연도 모든 기간 동안, 고시적용자, 다음 사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

① 휴직자 ② 시설수용자 ③ 군입대자

⑤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 보수의 범위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6)계와 (18)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기재
- 근무월수 산정방법
  -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
  -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아 고지유예 신청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전적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

4) 연말정산 결과

①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 근로자: 매년 4월분 보험료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 매년 6월분 보험료

② 연말정산 보험료가 부과되는 월의 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 보험료를 5회로 분할 적용하여 해당 월 보험료에 합산 부과

③ 연말정산 보험료 반환

- 정산 반환금액이 1개월분 보험료 이내: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월 보험료에 충당
- 정산 반환금액이 1개월분 보험료 초과: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월 보험료에 충당, 잔액은 사업장의 신청에 의해 과오납 환급금 지급

④ 새로운 보수월액 적용기간

- 보수월액 = 연간 보수총액 ÷ 근무월수
- 근로자: 당해 연도 4월 ~ 다음연도 3월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 당해 연도 6월 ~ 다음연도 5월

5)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정산

- 사업장에서 공단에 신고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과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 자료 연계를 통해 보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료 부과액의 형평성 및 보험재정 안정성 확보

(2) 사업장 지도점검

1) 목적 및 실시 기준

- 목적
  - ①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 건강보험 신고 사항에 대한 정기적 업무안내로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처리 도모
  - ② 착오·누락·부당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확인하여 재발사례 방지

▪ 실시기준

- 지사별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실시

2) 지도점검의 종류와 방법

	정기지도점검	특별지도점검
대상선정	지사별 연중계획에 따라 선정	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선정하여 지사에 통보
방법	출장 및 서류지도 점검 병행 실시	출장 지도점검

3) 확인사항 및 대상서류

지도점검 확인사항	지도점검 대상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및 대표자 변경신고 적정여부</li> <li>• 자격취득,상실의 적정성 여부</li> <li>• 근무내역변동자의 변동신고 적정성 여부</li> <li>• 적정보험료 공제여부</li> <li>• 보험료 연말정산, 중간정산, 퇴직정산 적정성 여부</li> <li>• 소득축소 및 탈루 여부 확인</li> <li>• 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인 관련사항 지도 및 홍보, 건의사항 수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li> <li>• 임금(급여)대장</li> <li>•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li> <li>•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개인대표자)</li> <li>•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li> <li>•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약서 등)</li> </ul>

(3) 직장 허위취득자 가산금 부과관리

1) 개요

- 지침 시행일 : 2018.7.1.
- 가산금 부과대상 기준
  - 2016.9.23. 이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거짓으로 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건부터 적용

2) 목적

-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근로자를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취득시키는 사례가 증가,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하여 직장 허위취득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3) 가산금

- 부과대상: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
- 부과금액: 허위취득 기간 동안 「(지역보험료 총액-직장보험료 총액)×10%」



## ◆ 근로자 국민연금 적용

### 1. 국민연금제도 알아보기

#### (1) 국민연금제도

##### 1) 국민연금제도의 목적

-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 장애 또는 사망과 같은 사유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 2) 국민연금의 특징

- ①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
- ②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보완
- ③ 소득재분배 기능
- ④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 2. 국민연금 적용대상 알아보기

#### (1) 국민연금 가입

##### 1)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제외대상
  - 직역연금법 적용 대상, 국민연금법의 노령연금 수급자

##### 2) 가입자의 종류

-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 3) 사업장 당연적용 신고

- ① 대상: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대표이사 1명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당연적용 대상)
- ② 사업장 적용일: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때
- ③ 신고기한 및 서류
  - 신고기한: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신고서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4)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

- ① 대상: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칭, 주소 등이 변경된 사업장
- ② 신고기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③ 신고서류: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필요시 법인등기부 등본 등 제출)

※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장 내용변경대상이 아니라 기존 사업장 탈퇴 후 사업장을 신규 적용 해야 함

##### 5) 사업장 탈퇴

- ① 대상
  - 휴업이나 폐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
  - 합병이나 분할로 소멸되는 사업장
  -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

- ② 탈퇴일
  - 휴업일 당일, 폐업일 다음날(단, 폐업일이 매월 1일인 경우 폐업일로 적용 가능)
  -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최종 상실일
- ③ 신고기한 및 서류
  - 신고기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서류: 사업장 탈퇴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3. 근로자 국민연금 적용 신고하기

#### (1)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상실신고

##### 1) 자격취득 신고대상

- ①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 및 근로자
- ②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이상, 월60시간(주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 ③ 일용근로자로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
  - ※ 건설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자격취득대상
- ④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본인이 희망하여 연금지급이 정지된 사람

##### 2) 근로자의 개념

-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 포함)
-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①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②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
  - ③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3) 자격취득시기

- ① 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때
- ②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종사하게 된 때
- ③ 단시간근로자가 당연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때 또는 근로자로 된 때
- ④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60시간 이상으로 된 때
- ⑤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의 월60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대학 강사 제외)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 ⑥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 4) 자격취득 신고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5) 신고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6) 자격상실시기

①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사용관계 종료(퇴직)
- 60세에 도달한 때
- 근로자에서 제외된 때
- 기초생활수급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제출한 때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 사망

※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거나 퇴직연금 등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자격상실시기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

7) 자격상실신고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8) 신고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2)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

1)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

-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 적용대상
-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내국민과 동등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는 무국적자나 난민

2)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대상

-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적용을 배제한 자(외교관,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 등)
-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자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자
-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자

3) 국가별 가입대상

- 연금제도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은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

사업장·지역 당연 적용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li> <li>•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li> <li>• 해당국가: 네덜란드, 독일, 미국, 스위스, 영국, 중국 등</li> </ul>
사업장 당연적용, 지역 적용 제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li> <li>• 해당국가: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타이(태국), 타이완(대만), 캄보디아 등</li> </ul>
사업장·지역 적용 제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국가의 외국인은 국민연금 적용대상 아님</li> <li>• 해당국가: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li> </ul>

4)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 ① 신고의무자: 가입대상 외국인이 종사하는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의 사용자
- ② 제출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③ 신고기한: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

1) 외국인에 대한 연금급여

-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은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음

2) 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 요건

-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주는 경우
-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3) 제출서류

- 급여지급청구서,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예금계좌, 비행기티켓(1개월 이내 출국)
- 해외송금 신청 시 해외송금신청서 추가

4.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1)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1) 정의

-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율”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액

2)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 기여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4.5%
-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부담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4.5%

3) 기준소득월액

- 연금 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

-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전원 미만을 버린 금액

4) 소득월액

-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 사용자의 경우: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5)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매년 고시
- 고시된 상한액과 하한액의 적용기간: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적용
  - 신고한 소득월액 < 고시된 하한액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으로 함
  - 신고한 소득월액 > 고시된 상한액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으로 함

6) 자격취득 또는 납부 재개시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 ① 월이나 주 또는 그 밖의 일정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입사(납부재개)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 소득을 포함
- ② 일·시간·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③ 위의 방법에 따라 소득월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자의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7) 급여 항목별 소득월액 포함

- ① 포함해야 하는 소득
  -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에서 지급하기로 확정된 모든 과세소득
  -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상여금, 고정 시간외 근무수당, 기타 각종 수당 등
- ② 포함해야 하지 않는 소득
  - 소득세법 상 비과세 소득, 입사(복직) 당시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소득
  - 비과세소득(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 등), 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실적급 등

8)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소득총액신고)

- ①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결정
- ② 적용기간: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9)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 사업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 결정

- 합산한 소득이 최고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비율로 조정 후 부과

10)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특례

- ① 실제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사업장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가능
- ② 의무적용사항이 아닌 신청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반드시 필요
- ③ 적용기간: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다음연도 정기결정 전월까지
- ④ 제출서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소득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임금대장 등)
- ⑤ 정산실시: 변경된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에 대해서는 과세자료와 임금대장 등으로 대조하여 가입자 자격상실  
이나 기준소득월액정기결정 시기에 확인하여 연금보험료 정산 실시

## 국민연금 납부와 혜택

### 1.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 (1)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 1)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고지 일정

###### ① 매월 자격변동사항 신고

- 사용자는 자격변동사항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국민연금공단으로 신고
- 매월 15일까지 신고분은 당월분 고지에 반영
- 16일부터 말일까지 신고분은 익월분 고지에 반영

###### ②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 발송

- 자격변동자료 마감 후 연금보험료 산출
-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사업장에 납입고지서 발송 (매월 22일 이후)

##### 2) 기여금의 원천공제

-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매월 임금에서 원천공제
- $\text{기여금} = \text{기준소득월액} \times 4.5\%$
- 자격취득월의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 ※ 자격취득월 당월분부터 보험료 납부 가능
  - ① 자격취득일이 월의 1일(초일)
  - ② 가입자가 취득월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text{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 = \text{기여금} + \text{부담금}$$

##### 3)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

- $\text{기여금(근로자 부담)} = \text{기준소득월액} \times 4.5\%$
- $\text{부담금(사용자 부담)} = \text{기준소득월액} \times 4.5\%$
- 납부기한: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

##### 4) 납부예외 신고대상

- 휴직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예외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신청 가능
- 제출서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휴직발령서 등 입증 서류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가능)

##### 5) 납부재개신고

- 납부예외자가 복직하였을 경우, 복직일을 “납부재개일”로 기재하여 신고서 제출
- 제출서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납부재개일이 2일 이후인 경우 해당 월 납부희망 여부 기재)
  - ※ 납부예외자가 휴직기간 중에 퇴사하였을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2)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 1) 연체금

- 연금 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됨

2) 연체금 일할계산

- 납부기한 경과 30일까지는 1일 경과마다 미납보험료의 1/1,500 가산 (2% 이내)
- 납부기한 경과 30일 초과 시에는 1일 경과마다 1/6,000 가산
- 최대 5% 이내

3) 독촉

- 건강보험공단은 연금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

4) 체납처분

- 건강보험공단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3)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1) 과오납금 반환청구

-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등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비, 급여의 환수금과 연체금, 미납된 연금 보험료의 연체금과 보험료, 향후 납부해야 할 1개월분의 연금 보험료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반환청구 할 수 있음

(4)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제도

1) 추후납부제도 안내

-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추후납부 대상기간(10년 미만의 범위)
  - ① 연금 보험료 납부예외기간
  - ②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의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자 및 1년 이상 행방불명자 사유로 적용제외 된 기간
  - ③ 군복무기간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 제외)

2) 추후보험료 납부신청

- 신청대상 요건
  - ① 현재 자격유지기간 중이어야 함 (적용제외자의 경우는 임의가입 후 신청가능)
  - ②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날은 최소 1개월분(과소납 불인정, 반환일시금 지급된 기간 불인정)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의미
- 신청 시 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제), 제적등본

3) 추후보험료 납부방법

- ① 일시납부
  - 납부횟수 1회
  - 납부기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② 분할납부
  - 월 단위 최대 60회
  - 납부기한: 신청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의 매월 말일



## 2. 국민연금의 연금급여

### (1) 국민연금의 급여

#### 1)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 연금급여(매월지급):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 일시금 급여: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

#### 2) 노령연금

-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음
-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구분

#### 3)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연령: 60세에 도달한 자
- 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953년 출생자부터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가 된 때에 연금 지급

##### ①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도달 전에 청구한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0세 전에는 그 기간의 연금을 지급 정지
-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연령별 감액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연금 지급

##### ② 분할연금

-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
-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 본인의 60세 도달

#### 4) 장애연금

-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 有
- 완치 후에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
- 장애 정도 (1급~4급)에 따라 급여 지급

#### 5) 장애연금 지급 요건

##### ① 초진일 요건

-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18세 이상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 미만이어야 함

##### ②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요건

- 초진일 당시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 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6) 유족연금

-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

- 유족의 범위
  -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다음 요건에 충족하는 대상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 지급
    -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 19세 미만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7) 유족연금 수급요건

-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②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③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 ④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 ⑤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8) 반환일시금

- 지급연령(60~65세)이 되었을 때,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국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에 지급하는 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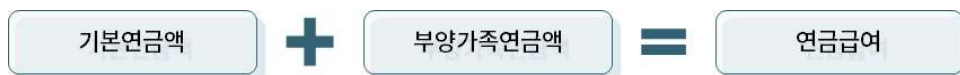
9) 사망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조기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장제부조적 성격의 일시금을 지급하여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국민연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보완적 급여
- 수급요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

3. 연금급여액

(1) 연금급여액

1) 연금급여액 구성



- 기본연금액
  - 가입자 전체 소득과 가입자 본인의 소득 및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
  -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급여수준 격차 감소
  - 물가변동률과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항상 실질가치 보장
  -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득의 9%로 4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시, 가입기간이 속한 연도에 따라 소득의 40~70%를 받게 됨

▪ 부양가족 연금액

- 연금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일정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
- 지급대상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2) 노령연금액

-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
- 가입기간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에 부양가족연금을 합산한 금액  
10년 초과 1년당 기본연금액의 5% 증액

3) 조기노령연금액

-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액 산정
- 가입기간 1년 증가 시, 기본연금액 지급률 5% 상승, 수급개시연령에 따라 지급률 차등

4) 분할연금액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5) 장애연금액

-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장애등급	급여수준
장애1급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2급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3급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4급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6) 유족연금액

-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매월 연금으로 지급
- 가입기간별 유족연금액

가입기간	유족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7) 반환일시금액

-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됨
-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
- 연금 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

8) 사망일시금액

-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
-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음

(2) 연금급여의 수급기간 및 수급방법

1) 수급기간

- 연금급여는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
- 연금급여와 수급사유 발생일

노령연금	지급연령(60~65세 생일) 도달일
조기노령연금	청구일
장애연금	완치일 또는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	사망일

2) 수급일

- 매월 25일
-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수급요건이 확인되고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진 경우 청구 즉시 지급 가능

3) 수급방법

-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의 예금계좌

4) 연금급여 수급권 소멸

- 수급권자의 사망
- 유족연금의 경우 배우자인 수급권자의 재혼
-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의 파양
- 25세 도달(자녀)
- 19세 도달(손자녀)

5) 중복급여의 조정 (국민연금 급여간 조정)

- 한사람에게 둘 이상의 국민연금 급여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경우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음
- 다른 법률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이 조정(1/2)되거나 일정기간 지급 정지

## ◆ 건설현장 건강·연금보험 실무

### 1. 사후정산제도의 개요

#### (1) 사후정산제도의 개요

##### 1) 정의

-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수급인→원수급인→발주자)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

##### 2) 도입배경

- 사회보험료가 낙찰률에 연동되어 건설업체들이 사회보험료 부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실제 납부 영수증을 통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코자 함

##### 3) 적용 공사

- 정부 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 민간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공사

##### 4) 적용 방안

- 건설공사계약서에 사후정산 내용 기재: 공사원가 내역서에 국민연금·건강보험별로 실제 노무비수준의 적절한 보험료를 계상하여 사후정산토록 하는 약정을 맺어야 함
- 사업장 적용신고: 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 가입자 신고: 취득신고(건설일용근로자가 1월간 8일 이상 근무), 상실신고(건설일용근로자가 1월간 8일 미만 근무하거나 퇴사), 소득변경신고(건설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전월보다 높거나 낮은 때)
- 보험료 고지 및 납부: 정기고지·일괄 경정고지·수시 경정고지를 이용하여 사업장의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보험료 납부
- 보험료 수령: 기성청구 시 전월의 보험료 납부영수증(보험료납입증명서)을 첨부해 보험료를 지급받음

### 2. 사후정산제도 사업장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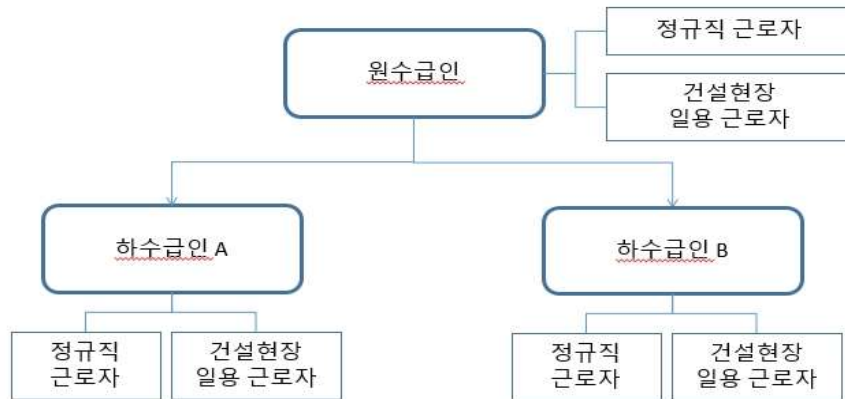
#### (1) 사후정산제도 사업장 적용

##### 1) 사업장 적용 기준

- 건설현장별로 적용: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 적용, 원수급인, 하도급 사업장별 건설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 적용,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본사 사업장의 사업장 가입자로 취득 가능

- 건설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 최초 공사(계약)기간은 1개월 미만이나, 기간 연장 및 갱신 계약 등으로 실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건설현장 포함

※ 사업장 적용 예시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3개 사업장 적용(원수급인 건설현장, 하수급인 A 건설현장, 하수급인 B 건설현장)

2) 건설현장 사업장 신고 방법

- 사업장 적용신고: 사업자 최초 적용신고는 공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 현장별로 적용 신고.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공사계약서를 제출
  - ※ 공사계약일 이후에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더라도 공사기간 중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 함. 공사기간 종료 이후에는 적용 신고 불가
- 사업장 적용 신고 시 유의사항
  - 사업장 명칭: 회사 명칭 + 현장(예, ㈜ OO건설 OO동 A공사현장)
  - 사업장 주소: 공사현장 주소(우편물 수령지는 본점 주소지로 신청 가능)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본점 사업장의 사업자(법인)등록번호로 등록
  - 사용자: 본점사업자의 사용자로 등록
  - 본점 사업장 내역 입력: 본점 사업장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본점 사업장을 등록 후 건설현장 사업장을 분리 적용
- 사업장 내용변경(정정)신고: 공사기간 연장, 사업장 등록 등에 변경(정정)사항이 있는 경우, 사용자 성명, 사업자주소 등이 변경(정정)된 경우 사업장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장 탈퇴 신고: 공사기간 종료 시 사업장 탈퇴신고를 함. 탈퇴일은 공사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이며 공사기간 종료 후에도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최종 근로한 날의 다음날이 탈퇴일이 됨  
분리적용 해지 절차 없이 탈퇴 처리 가능

3. 사후정산제도 사업장가입자 적용

(1) 사후정산제도 사업장가입자 적용

1)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

- 건설공사현장에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건설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로: 최초 근로일 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 월 8일 이상 근로: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연속하여 근로할 경우 익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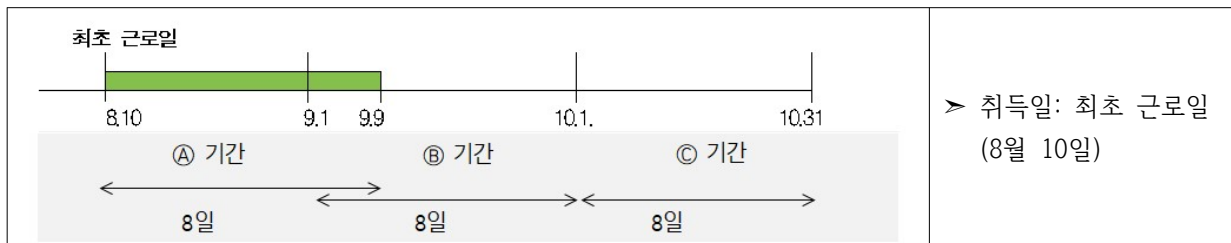
-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인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 : 실제 근로기간·일수 불문하고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거나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는 월 8일 미만이나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포함) 및 외국인 건설일용근로자

※ 국민연금의 건설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 적용기준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2022.1.1. 기준 220만원 이상의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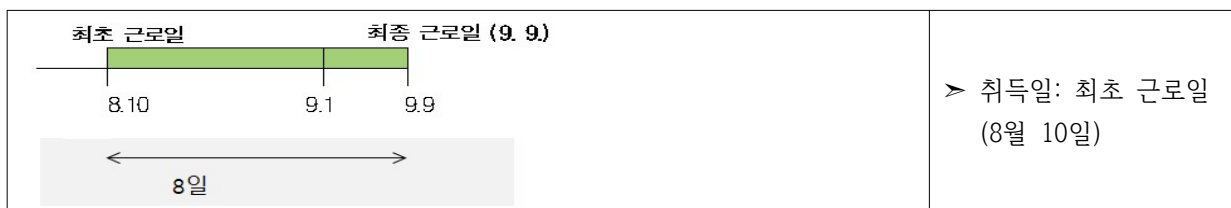
2)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근로형태		취득일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		최초 근로일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최초 근로일
	전월 근로일(8일 미만)이 있고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최초 근로일 의 월 초일(1일)

자격취득일 예시) 1. 최초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고, 그 이후로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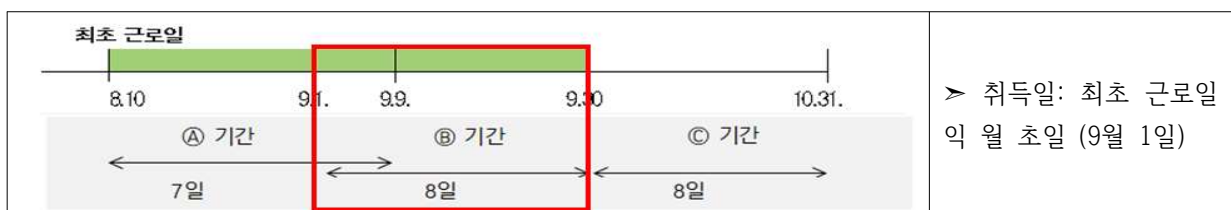


자격취득일 예시) 2.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만약 최종 근로일이 9월 8일인 경우라면 1개월 이상 근로가 아니므로 자격취득 대상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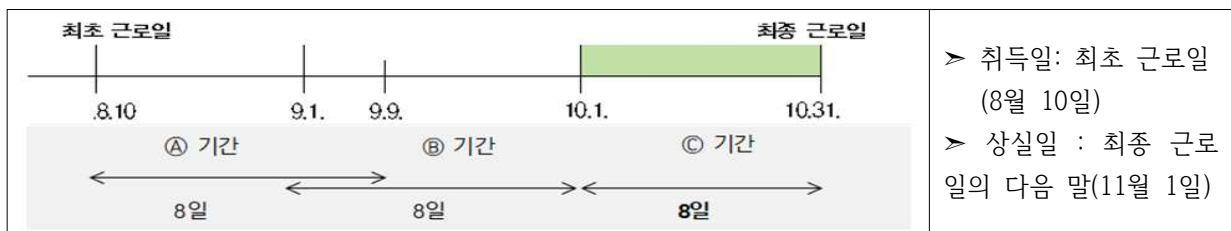
자격취득일 예시) 3.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미만 근로하고 최초 근로일 익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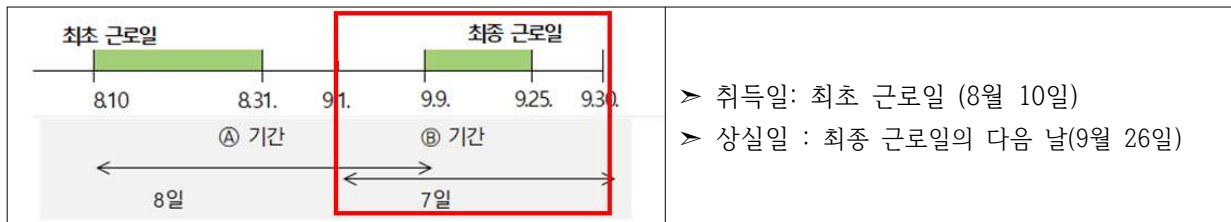
3)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근로형태		상실일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의 사용관계종료일의 다음 날
근로계약서 없는 경우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한 후, 최초 근로일 익 월에 8일 미만 근로한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자격취득하여 계속적으로 가입 후 최종 근로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해당 최종 월 초일(1일)

자격상실일 예시) 1.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자격상실일 예시) 2.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한 후, 최초 근로일 익 월에 8일 미만 근로한 경우



4)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보수적용 기준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변동된 보수를 적용하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
- 보수월액 인상·인하 시에는 매월 보수월액 변경 신고
- 자격 취득 시 보수월액 적용: 취득 월 또는 부과대상 월의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취득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적용
- 가입기간 중 보수월액 적용: 사업장의 보수월액 변경신청에 따라 신고 된 부과 대상 월의 실제 보수월액에 따라 적용하며 보수월액 변경신청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적용

5)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자격신고

- 자격취득·상실·보수변경신고는 다음 달 5일까지 하여야 하며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자격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등을 EDI로 신고

6) 보험료 고지

- 보험료 정기고지: 당월분 보험료 산정 기준일(매월 15일)까지 자격변동 보수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후 고지 내역서 및 고지서(1차)송부

- 일괄경정고지: 당월분 고지 내역서를 확인 후 자격변동 및 보수 변동내역신고를 다음달 5일까지 신고하고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일괄 경정고지 내역을 송부함. 일괄경정고지 내역서는 EDI로 전송하며, 매월 5일 신고 마감 후 산정 마감일 다음날 고지함. 건설현장 사업장은 반드시 최초 고지금액이 아닌 매월 일괄경정에 의한 최초 결정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수시 경정고지: 일괄 경정고지 전·후에 보험료 납부 및 정산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며 수시 경정고지내역서는 EDI로 재전송하고 고지기한은 매월 9일까지임

7) 보험료 고지업무 절차

- 당월분 고지내역서 전송 → 자격변동 신고 → 일괄 경정처리 및 통지 → 당월분 경정고지내역서 납부 또는 수시 경정고지 신청 → 최종 경정고지내역 재송부 → 최종 경정고지내역서 납부

8) 보험료 납부확인

- 사업장별, 가입자별로 '보험료 납부증명서' 발급

##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 1. 사회보험료 지원

#### (1) 사회보험료 지원

##### 1) 사회보험 의무가입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무가입 제도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4대 사회보험은 사업주가 신고하는 의무가입제도

##### 2)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의의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함

##### 3)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내용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고시소득 상한액 미만일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각각 80% 지원

##### 4) 지원 대상-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규모를 판단함
- 근로자 수 산정: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한 피보험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고용보험에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사용된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근로자 수 산정. 국민연금의 경우 사용자(법인 대표이사 포함)는 제외함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판단 기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경우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5) 지원 대상- 근로자 보수 기준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시소득 상한액 미만(2023년 기준 월 260만원)
-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총액이 고시소득 상한액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
- 재산과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고액자산근로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6) 지원수준

- 신규 가입자: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
  - ※ 신규 가입자 : 최초 가입자 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 7) 보험료 지원방법

- 신청월분 보험료를 납기 내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고지
- 보험료 고지서에 보험료 지원금을 '사회보험료 지원금'으로 명시
- 피보험자격 취득을 늦게 신고한 경우 소급 지원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폐업·휴업·근로자 없음 등으로 사업에 향후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미지원'
- 사업장에 다음달(지원금 공제받을 월) 당월분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미지원'

8) 보험료 지원 절차

-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보험료 지원 신청
- 보험료 지원 사업 결정·통보: 공단 전산자료를 기초로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하여 결정
- 보험료 지원금 산정·통보: 매월 20일경 실제 산정된 사업주 지원금과 근로자 지원금 내역을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통지

9) 보험료 지원제외

- 해당연도에 신규 입사한 지원 대상근로자의 경우 지원 당시는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연도 중 보수가 변경되어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가 상한액 기준 110%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지원제외 신청
- 사유 발생 월(평균보수가 상한액 기준 119% 초과사유 발생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제외되며 보험료 지원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보험료 지원금 환수 기준

-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 전부
- 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 중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었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3개월째 된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 보험연도 중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한해 사업주가 다음연도에 신고한 보수총액 또는 상실 신고 시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액이 상한액 보수기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전부
-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월평균보수 인하를 신고하여 지원을 받은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고시된 해당연도 보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 그밖에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